

관세청, 「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」 발표 ... 체납 특별 정리기간 운영, 체납실태 전수조사 실시

- “체납 특별 정리기간(25.9.18.~12.12)” 운영으로 대대적인 체납정리 실시
- 「관세 체납관리단」 신설하여 체납자 실태 전수조사 실시 ... 고액·상습 체납자는 은닉재산 추적 강화,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적 재기 기회 부여

□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체납 규모*에 대응하여 「관세 체납정리 특별대책」을 9월 18일(목) 발표했다.

* 체납액(억원): ('21) 15,780 → ('22) 19,003 → ('23) 19,900 → ('24) 20,786 → ('25.8.) 21,155
체납인원(명): ('21) 2,523 → ('22) 2,455 → ('23) 2,615 → ('24) 2,467 → ('25.8.) 2,518

○ 이번 대책에는 장기체납, 고액·신규 체납 등을 대상으로 하는 “체납 특별 정리기간” 운영 및 「관세 체납관리단」 신설을 통한 체납 실태 전수조사가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.

□ 먼저, 관세청은 2025년 9월 18일(월)부터 12월 12일(금)까지 “체납 특별 정리기간”을 운영하여 관리가 어려운 장기체납,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액·신규체납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체납정리를 시작할 예정이다.

○ 특별 정리기간 동안 은닉재산을 집중 추적하여 체납자 면담·가택수색·압류·매각 등 행정제재를 총동원하는 한편, 체납액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*를 제공하여 최대한 납부를 유도한다.

* ①분할납부, ②강제징수·압류·매각 유예, ③신용정보제공 유예, ④출국금지 해제, ⑤감치 미신청 등

☞ [붙임 1] (사례1) 수천억대 체납자의 은닉재산 집중 추적으로 가택수색감치 등을 통한 징수 사례 참조

□ 다음으로, 「관세 체납관리단」을 신설하여 관세청 최초로 체납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.

- 전체 체납자의 실제 거소·생활수준·수입·재산 등을 확인하여 은닉재산 및 고의 체납 여부를 파악하고, 대면으로 체납액 납부 의사 및 납부 계획을 확인함으로써 체납자 재분류 및 맞춤형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.
- 이를 위해 다가오는 4분기에 고액 체납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하고,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.

□ 관세청은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여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고, “체납자 프로파일 데이터베이스(DB)” 구축으로 체계적인 체납 관리의 기틀도 마련할 계획이다.

- ❶ **고위험 체납자**에게는 압류재산 매각, 감치, 해외 은닉재산 및 가상자산 추적, 사해행위 취소소송, 출국금지, 신용정보제공 등 엄정한 강제징수 절차 및 행정제재를 집행한다.
- ❷ **생계형 체납자**에게는 압류·매각 유예 및 분할납부 적극 승인, 신용정보 제공 유예, 통관허용 등 회생기회를 부여한다.
- ❸ **관리가 필요치 않는 거소불명·무재산 체납자**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 방지와 납세자의 생활 보호를 위해 ‘정리보류*’하되 정기적인 재산조사로 사후관리를 지속할 예정이다.

* 체납자 소재파악 곤란·무재산 등으로 강제징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하여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 절차 잠정적 종료 조치

< 「관세 체납관리단」 운영을 위한 추진내용 및 일정 >

- (법령) ‘실태확인 종사자’ 정의 신설 및 의무·실태확인 범위,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근거 규정 마련 → 국세징수법 세제개편안 반영(‘26.1.1. 시행 예정)
- (예산) 「관세 체납관리단」 인건비·차량 임차료 등 운영 필요 예산 마련 → ‘26 예산안 국회증액 요청 중(12억원 상당)
- (조직) ‘실태확인 종사자’ 48명 채용 및 체납관리단 신설·운영 → 추진 중



□ 관세청은 빅데이터·인공지능(AI) 등 신기술을 활용한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와 더불어 신개념 재산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분석·징수 방안을 마련한다.

☞ [붙임 1] (사례2) 배우자 사업체로 재산은닉한 체납자 빅데이터로 추적, 가택수색으로 징수 사례 참조

○ 특히 주요국 파견 관세관, 국내외 물류·인적 이동 관리 기능을 적극 활용해 해외 도피 고액 체납자 또는 해외 은닉재산 추적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☞ [붙임 1] (사례3) 해외도피 고액체납자 관세청 보유정보 활용으로 베트남 은닉재산 징수 사례 참조

□ 이명구 관세청장은 “효율적인 체납정리를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마련하고, 생계형·일시 체납자 재기를 지원해 조세 정의와 공정 성장을 적극 실현하겠다”며,

○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재산 신고*를 당부했다.

* 체납자 은닉재산(현금·예금·주식·그 밖의 유무형 재산) 관세청 신고, 체납액 징수 시 포상금 지급 (붙임2 참조)

붙임 1. 관세 체납자 행정제재 및 강제징수 주요 사례 2.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 홍보 리플릿

담당 부서	관세청 세원심사과	책임자	과 장	오현진 (042-481-7870)
		담당자	사무관	주미옥 (042-481-7871)



붙임1

관세 체납자 행정제재 및 강제징수 주요 사례

- (사례1) 고액·상습 관세 체납자 A씨를 의정부지방법원(남양주지원) ‘감치 30일’ 결정에 따라 '25.1.8.~2.6.까지 의정부교도소에 감치(32백만원 징수)

< 관세법상 감치 요건(관세법 제116조의 4) >

- '20년 이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후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액이 2억 원 이상
- 체납된 관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
- 관세청 관세정보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 필요성이 인정

- A씨는 농산물 수입권 공매* 입찰 과정에서 제3자(이른바 바지사장)를 동원하여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며 관세를 회피,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징세액 체납

* 농산물 수입권 공매 : 수입되는 특정 농산물의 일정 물량을 저관세율로 통관할 수 있는 권리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가 공매를 통해 수입자에게 배정하는 제도

- A씨 체납을 관리하는 부산세관은 A씨에게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독촉했으나,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(46억 원), 주식(23억 원) 등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음
- ('24.6월)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하여 A씨가 배우자 회사 소유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며 배우자 명의의 고급 주택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확인, A씨가 보관 중인 골프채, 양주 등 압류 ('24.10월) 관세청 관세정보위원회 의결,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감치 신청 ('24.12월)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거, 감치 재판에서 A씨 의견 청취 후 ‘감치 30일’ 결정, A씨가 항고하지 않아 감치결정 확정

< 주택 및 압류 물품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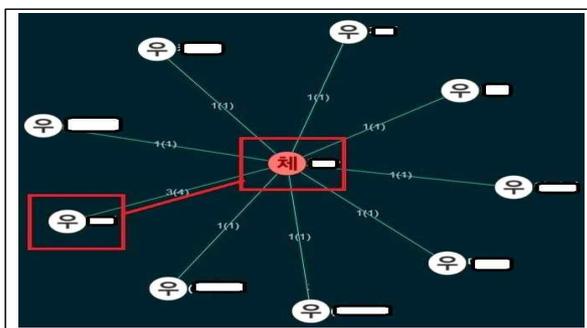


□ (사례2)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를 실제 운영하는 체납자 대상 빅데이터 분석 및 가택수색 실시 결과 금고에 보관된 현금 1억 1000만원 징수('24.11월)

○ 서울세관 125 추적팀은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신규업체로 기존 체납업체와 동일한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연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에 이르고 있음에도, '20년 이후 체납액 납부 사실 전무

○ 우회수입 분석 빅데이터 시스템*을 활용해 무역실적, 매출액, 사업자 등록내역 등을 사전 분석하고, 탐문·체납자와의 면담 및 가택수색 실시

* 체납자·수입자 간 연관정보를 분석해 체납자의 우회수입 여부 확인



체납업체와 연락처·주소·이메일 동일사업자가 배우자 명의 사업자임을 확인

▶ 분석 시스템 통해 연락처·주소 동일 확인

↓

사업자등록 상 주소 동일·주업종 유사, 체납업체 폐업('19.12.31.) 직후 개업('20.1.2.)

↓

가택수색을 통해 금고 은닉 현금 1.1억원 압류 및 총당('24.11월)

□ (사례3) 해외 체류 중인 고액 체납자를 방문 조사하여 재산현황을 파악, 체납액 납부를 설득한 결과 1억 5000만원 징수('24.9월) 및 분할납부(월 2백만원)

○ 부산세관 125 추적팀은 '17년에 사업체 폐업 및 체납 후 출국한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의 다양한 보유정보(출입국 내역, 업체현황 등)를 활용하여 정보분석한 결과, 베트남에서 거주 및 사업체 운영 추정하고, 수 차례 유선 연락 등을 거쳐 해외에서 직접 면담

○ 체납자가 해외에서 운영 중인 회사 및 체납자의 재산 현황 등을 파악,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일시금으로 일부 체납액 징수 및 분할납부 진행 중

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

체납자가 은닉한 현금·예금·주식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·무형의 재산을 관세청(세관)에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, 징수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

※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



고객·상습 체납자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 중임
정보공개 ● 사전정보 공표 ● 고객상습체납자 명단공개

징수금액	지급률
2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	100분의 20
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	1억 원 + 5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
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	3억2천5백만 원 + 20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
30억 원 초과	4억2천5백만 원 + 30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

※'22.2.15일 시행

전화신고

- 국번없이 125
-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02-510-1332
- 부산세관 체납관리과 051-620-6391

인터넷 신고

- 관세청 누리집 www.customs.go.kr
- 국민참여 ● 신고미당 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

우편(서면)신고

- 0605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1 서울세관 체납관리과
- 48940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세관 체납관리과

